

캐나다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내정지원에 관한 법제

정보신청기관 : 대한적십자사

I. 개인 및 법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주요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사적 단체이든 공적 단체이든 자선, 종교, 문화, 교육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품에 대해서는 대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기부액 전액은 아니고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만큼에 대해서만 공제(세금혜택)를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¹⁾ 우선 여기서는 기부자(donor)의 입장에서 어떤 조세혜택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항목을 바꾸어서는 기부를 받는 자(donee) 입장

에서 어떤 조세혜택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1. 개인(individual)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경우에 일정한 형태의 개인적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deduction)를 주장해 세금을 줄일 기회를 가질 수 있다.²⁾ 한편, 개인은 납세해야 할 연방세를 산정함에 있어 다양한 세액공제(tax credit)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교육비용, 의료비용,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세금을 줄일 기회를 갖는다. 어떤 종류의 세액공제를 얼마만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각 개인마다 다르다.³⁾ 통상적으로 개인은



1) Ault/Arnold, Comparative Income Taxation(3rd Edit.), Wolters Kluwer, 2010, pp. 286-288.

2) 가령 육아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데, 법이 정한 7세 이하의 어린이라면 7,000 캐나다달러의 한도 내에서, 법이 정한 나머지 어린이의 경우에는 4,000 캐나다달러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IBFD(www.ibfd.org)의 Canada/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Mar 2010) 중 1.7.1.절.

3) IBFD(www.ibfd.org)의 Canada/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Mar 2010) 중 1.7.3.절.

등록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액에 대해 우선 200 캐나다달러(CAD)만큼에 대해서는 15%(최저 연방세율임)의 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200 캐나다달러를 넘는 부분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29%(최고 연방세율임)의 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⁴⁾

이때 기부금품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⁵⁾ 첫째, 자산(현금, 현물, 토지, 유가증권 등)의 소유권을 등록된 자선단체나 그에 상응하는 적격수증자(qualified donee)에 넘겨줘야 한다. 둘째, 그러한 소유권의 이전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편, 캐나다에서 기부금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 년에 납세자 소득의 75%를 한도로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⁶⁾ 하지만 일정한 문화자산(certified cultural property)이나 환경적으로 중요한 토지(ecologically sensitive land)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기부자의 순소득의 100%만큼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세액공제

한도액은 그 뒤 다섯 해 동안을 한도로 해서 계속 세액공제에 이용할 수 있다(a five-year carryforward).⁸⁾ 따라서 당해 연도의 소득신고를 할 때 그 해 한 기부금품 전부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그 뒤의 과세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이월시키려면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신고를 할 때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를 이월하려고 하는 금액 등을 명기해 첨부해야 한다.⁹⁾

2. 법인(corporation)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T2 법인소득신고의 기회에 기부금품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¹⁰⁾ 기부시 법인이 갖는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Guide T4012, T2 Corporation - Income Tax Guide를 참조하면 된다.¹¹⁾ 이에 따르면, 등록자선단체 등에 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손금산입(deduction)을 주장할 수 있다.¹²⁾ 한편, 기업구조조정 전에 있던 법인이 기부를 한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후에 존속



4) <http://www.cra-arc.gc.ca/chrts-gvng/dnrs/svngs/2-eng.html>.

5) <http://www.cra-arc.gc.ca/chrts-gvng/dnrs/svngs/1-eng.html>.

6) 앞서, '기부액 전액은 아니라 납세자 소득의 일정비율분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이다.

7) <http://www.cra-arc.gc.ca/chrts-gvng/dnrs/svngs/2-eng.html>; Ault/Arnold, 앞의 책, p. 286.

8) Ault/Arnold, 앞의 책, p. 286.

9) <http://www.cra-arc.gc.ca/chrts-gvng/dnrs/svngs/2-eng.html>.

10) <http://www.cra-arc.gc.ca/chrts-gvng/dnrs/svngs/4-eng.html>.

11) <http://www.cra-arc.gc.ca/E/pub/tg/t4012/README.html>.

12) T2 Corporation - Income Tax Guide 2009, p. 48.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산입을 통해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손금산입은 먼저 한 부분이 먼저 손금에 산입된다.¹³⁾

II. 공동모금회(대표 비영리기관)에 대한 조세제도 지원 내역

앞에서 본 것이 기부자(donor)에 대한 조세혜택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기부를 받는 자(donee)에 대한 조세혜택의 내용을 개관해 본다. 기부를 받는 자의 경우는 그 검토 범위를 줄여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비영리단체 일반(자선목적의 단체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캐나다 적십자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자선단체(charities)로 더욱 범위를 좁혀 그 조세혜택의 내용을 검토한다.¹⁴⁾¹⁵⁾

1. 비영리단체 일반

캐나다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일정한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준다.¹⁶⁾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비영리단체가 사회복지, 시민들의 여가, 오락과 그밖에 자선목적(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적 목적만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¹⁷⁾ 그러한 단체는 면세혜택을 얻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자선단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지만, 이때에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에 비영리단체가 그 회원에 대해 식사제공, 유흥 혹은 스포츠시설을 주로 제공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단체의 연간투자소득이 2,000 캐나다달러(CAD)를 초과하는 부분은 면세규정이 있더라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¹⁸⁾

비영리단체가 과학연구(scientific research) 내



13) T2 Corporation - Income Tax Guide 2009, p. 49.

14) 캐나다에서는 이처럼 비영리단체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고 있다. 하나는 영리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단체와 자선목적(을 위한) 단체가 그것이다. 상세는, branch report(Canada), "tax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vol. 84a), IFA, 1999, pp. 322-323. 위 글에서는 자선단체(charities), 등록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 자선기관(charitable organizations)과 자선재단(charitable foundations), 공적 사적 재단(public and private foundations)으로 각각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5) 이 글의 검토 범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단체 과세문제 접근시 캐나다에서 고려한 정책적 쟁점에 관해서는, 위 branch report(Cansda) 중 324-328쪽 참조.

16) 비영리단체의 과세 일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 참고할 만한 것은, "tax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vol. 84a), IFA, 1999. 그 중 총괄보고서(general report)에 대해서는 번역문이 있다. David Glikberg(유진선 譯), "비영리단체의 과세", 조세학술논집(제16집), 한국국제조세협회, 2000, 317-364쪽 참조.

17)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 149(1)(l). 캐나다 소득세법은 이하 CITA라 한다. 캐나다 소득세법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laws.justice.gc.ca/en/I-3.3/index.html>.

18) CITA Sec. 149(5).

지 과학실험발전(experimental development)을 수행하거나 장려할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경우에도 면세혜택이 부여된다.¹⁹⁾ 이때 회사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그 단체는 영리사업(business)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또 다른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도 없다. 면세혜택을 유지하려면, 회사 형태의 위 비영리단체는 소득의 90% 이상을 과학연구 혹은 과학실험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직접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정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²⁰⁾

면세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소득은 그 소유자나 회원 혹은 단체의 주주 등 누구에 대해서도 분배되거나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2. 자선단체

한편, 자선단체의 경우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는가? 자선단체는 등록/미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먼저 등록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라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등록자선단체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등록번호를 받게 된다.²¹⁾ 반면, 미등록자선단체는 소득세 면

제라는 조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선단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선단체가 오로지 자선의 목적(charitable purposes)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선목적이란 빈민구제, 교육장려(advancement of education), 선교(advancement of religion), 그밖에 지역사회에 유용한 다른 목적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가령 병원이나 대학은 이 등록을 하기 위한 적격이 있음이 대개 인정된다.²²⁾ 자선단체의 소득은 그 소유자나 회원 혹은 단체의 주주 등 누구에 대해서도 분배되거나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자선단체는 크게 봐서 자선기관(charitable organization)과 자선재단(charitable found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선기관은 고유의 자선활동을 수행하지만, 자선재단은 다른 단체 혹은 개인이 하는 자선활동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자선재단은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과 공적 재단(public foundation)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캐나다 소득세법은, 자선단체가 자선기관, 사적 자선재단, 공적 자선재단 중 어느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각 자선단체에 대해 각기 상이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²³⁾ 많은 경우



19) CITA Sec. 149(1)(j) 및 같은 법조항 (8)-(9).

20) IBFD(www.ibfd.org)의 Canada/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Mar 2010) 중 11.5.2.절.

21) CITA Sec. 149(1)(f).

22) IBFD(www.ibfd.org)의 Canada/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Mar 2010) 중 11.5.3.절.

에 사적 자선재단(private foundation)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사적 자선재단은 해당 재단의 이사장(principal)이 이사장 자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²⁴⁾

모든 등록된 자선단체는 기부금품(donations)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 줄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영수증이 있어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거나 기부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손금산입(dedu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등록자선단체는 반드시 연간지출쿼터(annual disbursement quota)를 준수해야 한다.²⁵⁾ 자선기관의 경우에 그 쿼터는 대개 전년도에 자선기관이 받은 기부금품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자선재단의 경우 그 쿼터는 재단의 투자포트폴리오 및 전년도에 받은 기부금품의 양을 고려해서 정한다.

등록자선단체는 반드시 연간정보서식(annual information form)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III. 적십자사에 대한 조세제도 지원 내역

앞서 본 것처럼, 등록하고자 하는 자선단체는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특정 자선단체가 등록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인지 여부는 캐나다 국세청의 등록리스트(charities listings)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²⁶⁾ 그렇다면 캐나다 적십자사는 어떨까? 앞의 등록리스트를 검색해보면 캐나다 적십자사 역시 등록자선단체임을 알 수 있다.²⁷⁾ 등록자선단체는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받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따라 부여받은 캐나다 적십자사의 등록번호는 119219814RR0001이다. 따라서 등록자선단체인 캐나다 적십자사 역시 소득세가 면제



23) 자세한 내용은, CITA Sec. 149.1.

24) IBFD(www.ibfd.org)의 Canada/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Mar 2010) 중 11.5.3. 절.

25) IBFD(www.ibfd.org)의 Canada/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Mar 2010) 중 11.5.3. 절. 지출쿼터의 말뜻에 대해서는, CITA Sec. 149.1(1) 참조.

26) <http://www.cra-arc.gc.ca/chrts-gvng/lstngs/menu-eng.html>.

27) 위 등록리스트의 검색란에 red cross를 검색어로 해서 검색하면 된다. 해당 결과는 다음 링크와 같다:

<http://www.cra-arc.gc.ca/ebci/haip/srch/charity-eng.action?r=http%3A%2F%2Fwww.cra-arc.gc.ca%3A80%2Febci%2Fhaip%2Fsrch%2Fbasicsearchresult-eng.action%3F%3Dregistered%26amp%3Bk%3Dred%2Bcross%26amp%3Bp%3D1%26amp%3Bb%3Dtrue&bn=119219814RR0001>.

28) CITA Sec. 149(1)(f).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²⁸⁾

참고로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된 캐나다 적십자사의 주요 등록 내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등록번호: 119219814RR0001
- 자선단체의 상태: 등록됨(Registered)
- 등록 개시일(Effective Date of Status): 1979-01-01
- 해당단체 사용언어: 영어
- 구체적 분류(Designation Description): 자선기관(Charitable Organization)
- 자선단체의 형태(Charity Type): 보건(Health)
- 카테고리: 병원업 이외의 서비스(Services Other Than Hospitals)
- 주소: 170 METCALFE STSUITE 300
- 도시: 오타와(OTTAWA)
- 주(Province/Territory/Other): 온타리오(ONTARIO)
- 국가: 캐나다(CA)
- 자선단체 이메일 주소: CAROL.LEE@REDCROSS.CA
- 자선단체 웹사이트 주소: WWW.REDCROSS.CA
- 등록자선단체 정보신고서: T3010 Return²⁹⁾

양 인 준

(외국법제조사원)



29) 위 등록자선단체 정보신고(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의 연도별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웹페이지 참조. 아래 내용은 위에서 적십자사를 검색하면 그에 자동적으로 링크되어 표시된다.

<http://www.cra-arc.gc.ca/ebci/haip/srch/t3010returnlist-eng.action?b=119219814RR0001&n=THE+CANADIAN+RED+CROSS+SOCIETY+LA+SOCI%C9T%C9+CANADIENNE+DE+LA+CROIX-ROUGE&r=http%3A%2F%2Fwww.cra-arc.gc.ca%3A80%2Febci%2Fhaip%2Fsrch%2Fbasicsearchresult-eng.action%3Fs%3Dregistered%26amp%3Bk%3Dred%2Bcross%26amp%3Bp%3D1%26amp%3Bb%3Dtrue>.